

19.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

대통령령 제15,982호 1998. 12. 31

개 정 이 유

지방세법의 개정(1998. 12. 31, 법률 제5615호)으로 고액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상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현금 대신 부동산으로 물납하거나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물납 또는 분납의 신청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 요 골 자

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물납제도를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령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4).

- (1) 물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 10일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통지하도록 함.
-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부동산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부동산을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도록 함.

록 함.

(3)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하되, 시가는 원칙적으로 토지의 경우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 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건물의 경우에는 시가기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은 시가로 보도록 함.

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일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으로 하고,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내에 신청하도록 함(령 제11조의5).

다. 취득세 종과세대상이 되는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의 범위와 적용기준을 정함(령 제84조의3).

라. 대도시안의 신설법인에 대한 등록세 종과세 제외 업종에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을 추가함(령 제101조).

마. 등록세 신고납부기한을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처에 접수하는 날까지로 함(령 제104조의2제1항).

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내지 제1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를 물납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납부기한 10일전까지 물납을 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세의무자에게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를 받은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3(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의 처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

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부동산이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한 부동산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물납한 때에는 납기내에 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의4(물납허가 부동산의 평가) ①제11조의2제2항 및 제11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가액에 의한다. 다만, 수용·공매가액 및 감정가액 등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은 이를 시가로 본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2. 건물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 ③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이 따로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고시가액을 시가로 본다.

제11조의5(분납세액의 기준 및 분납신청)

①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게 하는 경우의 분납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 1.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이하인 때에는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2.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의 금액

②법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의 납부기한내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미 고지한 납세고지서를 납기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와 분납기간내에 납부하여야 할 납세고지서로 구분하여 수정 고지하여야 한다.

제57조제2항중 “60일”을 각각 “90일”로 한다.

제84조의2의 제목 “(대도시등)”을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삭제한다.

제84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의3(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①법 제112조제2항제1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별장중 개인이 소유하는 별장은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사용하는 것을, 법인 또는 단체가 소유하는 별장은 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로 겸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오피스텔 또는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를 별장으로 본다.

②법 제11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을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2. 1구의 건물의 대지면적이 662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

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

3. 1구의 건물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중 1개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거용 건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과 그 부속토지

4. 1구의 건물의 연면적(공용면적을 제외한다)이 24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공동주택(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용 주택을 포함하되,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구의 건물로 본다)과 그 부속토지

③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1. 당사자 상호간에 재물을 걸고 우연한 결과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카지노장(관광진흥법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제외한다)
2.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

- 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슬로트머신·아케이트이퀴프먼트 등)를 설치한 장소
- 3.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중 증기탕
- 4. 두발과 안면에 대한 미용시설외에 욕실 등을 부설한 장소로서 그 설비를 이용하기 위하여 소정의 요금을 지급하도록 시설된 미용실
-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
 -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영업장소
 -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 ④법 제112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선박”이라 함은 시가표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선박을 말한다. 다만, 실험·실습 등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제외한다.

⑤법 제112조제2항 본문에서 “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라 함은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또는 고급선박을 2인이상이 구분하여 취득하거나 1인 또는 수인이 시차를 두고 구분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84조의4제1항중 “법 제112조제2항”을 “법 제112조제2항제6호”로 한다.

제84조의5 및 제84조의6을 각각 삭제한다.

제86조의3의 제목 “(사치성재산등의 신고납부)”를 “(중과세대상 재산의 신고납부)”로 하고, 동조제1호 본문 및 동호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 제5호를 삭제한다.

1. 별장·골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 및 고급선박

나. 골프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는 때

제99조의3제1항중 “법 제132조의2제1항”을 “법 제132조의2제1항 및 제2항”으로, “자동차를 말한다.”를 “자동차를 말하며, ”경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중 경형자동차를 말한다.”로 한다.

제99조의4를 삭제한다.

제101조제1항제7호중 “공업발전법”을 “산업발전법”으로, “첨단기술산업”을 “첨단기술산업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첨단업종”으로 하고, 동항에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0.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그 설립목적을 위하여 영위하는 사업

제101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 제3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통신설비 또는 시설을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 제3항을 삭제한다.

다만, 법 제138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도시에서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유치지역과 도시계획법의 적용을 받는 공업지역을 제외한다.

제104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4조의2(신고납부기한 등) ①법 제150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 까지”라 함은 등기 또는 등록의 신청서

를 등기소 또는 등록관청에 접수하는 날까지를 말한다.

②법 제150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사실상 설치된 날

가. 대도시안에서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

나. 대도시안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외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대도시안으로 이전하는 경우

2. 대도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기존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그 이전에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인가 등을 받은 날)

3. 제101조제1항 각호에 규정한 업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법 제1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의 적용대상이 된 때에는 다음 각목에 정하는 날

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당해 업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

나. 부동산을 취득한 후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는 겸용을 개시한 날

제130조의9중 “법인세법 제59조”를 “법인세법 제98조”로 한다.

제1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2조(과세대상재산) 법 제18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재산중 주택은 주거용으로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용으로만 사용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다만,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보며,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과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전용면적을 말한다)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제142조의2제3항중 “제8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를 말한다.”를 “법 제11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서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제146조의6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법 제196조의6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서에 과세물건·과세표준액·산출세액 및 납부액을 기재하여 시장·군수에게 동조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

196조의6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월중에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자에 대하여는 그 다음 연도의 연세액 일시납부는 신고가 없는 경우에도 시장·군수가 전화 등으로 납세의무자의 일시납부 의사를 확인하고 납부서를 송달함으로써 신고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146조의6제3항중 “제1기분의”를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의 기간중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세액을, 제1기분의”로 한다.

제194조의15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 제2호중 “제84조의3제1항제1호”를 “법 제112조제2항제1호”로 한다.

법 제234조의15제5호에서 “별장·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제2호·제2호의2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며, “주택의 부속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라 함은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제194조의15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

제194조의15제4항에 제19호 및 제2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동법에 의한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산업단지조성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토지

20. 대덕연구단지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단지관리계획에 의하여 원형지로 지정된 토지

제219조제1항중 “주업으로 하는 자”를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2년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로,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소유자의 동거가족”을 “농지소유자 또는 농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자와 그 동거가족”으로, “직접 농업에”를 “직접 2년이상 농업에”로 한다.

제2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9조(화물운송용 선박 등의 범위) 법 제28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화물운송용 선박과 외국항로취항용 선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선박을 말한다.

1. 해운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항 화물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 또는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시설대여업자가 선박을 대여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라 한다)가 취득하는 내항화물운송용 선박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국제선박등록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선박

가. 해운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항 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하는 선박

나.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외국항로에 전용할 것을 조건으로 대여한 선박

다. 수산업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원양어업선박

제227조제2호중 “재정경제원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한국토지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분리과세의 적용특례) 제 194조의15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동조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주택회보